

증평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정 [2003. 12. 26]

훈령 제6호

개정 2007. 4. 27 훈령 제32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07. 12. 21 훈령 제40호

개정 2008. 8. 6 훈령 제46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2. 12. 29 훈령 제153호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요시책을 널리 홍보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군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군정소식지의 명칭은 군수가 정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발행) 군정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간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군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발행인 및 편집인) 군정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가 되며, 편집인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7. 4. 27, 2008. 8. 6, 2022. 12. 29>

제5조(발행규격) 군정소식지는 A4규격의 책자형태로 발행하되, 편집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인쇄) 군정소식지의 인쇄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계약요건을 갖춘 인쇄업소를 정하여 인쇄한다.

제7조(게재내용) 군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군정 소개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수범사례

증평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정

5.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문예작품, 군정비평 등)

6. 기타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편집의뢰) ① 발행인이 군정소식지 편집을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3자 또는 편집요원에게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을 의뢰하거나 편집 요원을 따로 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고) ① 주민들로부터 문예작품, 군정의견 등 주민투고를 받아 군정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게재가 결정된 주민투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배부) 군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일반주민, 출향인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한다. 단, 발행규모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배부처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27 훈령 제32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증평군정소식지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2007. 12. 21 훈령 제4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6 훈령 제46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증평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책기획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2022. 12. 29 훈령 제153호,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이 훈령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